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43
----------	-------

발의연월일 : 2026. 3. 30.

발 의 자 : 한정애 · 김 윤 · 정태호
허성무 · 박수현 · 차지호
박상혁 · 조인철 · 유동수
김상욱 · 김현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 등 직역연금가입자가 최소 재직기간(10년 등) 후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가입되지 않고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사업장임의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최소 가입 기간(10년)만 채운 퇴직연금등수급권자는 수령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에서 배제됨에 따라 실질적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큼.

반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여 수급 가능한 대상자가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다른 신청이나 조건 없이 해당 직역연금에 당연가입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연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국민연금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당연 가입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를 폭넓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관련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 ----- ----- ----- ----- ----- ----- -----<단서 삭제>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	<삭 제>

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
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
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
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 다. (생략)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
직연금등수급권자

<신설>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가입자) -----

-----.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마. 「공무원연금법」, 「공

무원 재해보상법」, 「사

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

는 「별정우체국법」에 따

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

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

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

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

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

2. ~ 5. (생략)	<u>금등수급권자”라 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	---